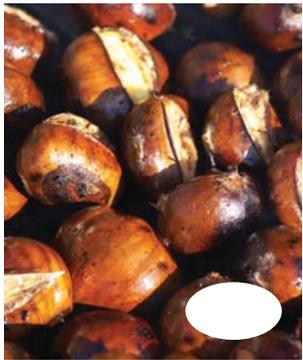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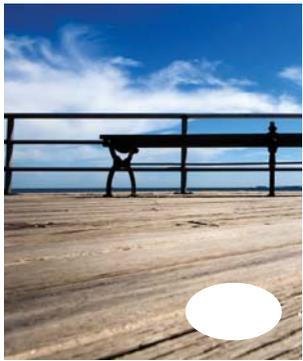


# 유권자 안내서

**내용:** 새로운 투표방법

<p>평소에 선호하는 교통수단 넷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p>				
<p>가장 좋아하는 음식 넷 중에 두 개를 고르세요</p>				
<p>제일 살고 싶은 주거형태 넷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p>				
<p>휴일에 가장 가고 싶은 곳 셋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p>				<p>中文指南 請看反面</p> 

총선 2010년 **11월 2일 화요일**

**시 현장 개정  
주민투표**

**2010년**

New York City  
Campaign Finance Board  
40 Rector Street  
New York, NY 10006

YOUR COUNCIL DISTRICT:

AD/ED:

## 자주 묻는 질문

### 11월 2일 총선에서 제가 투표할 수 있나요?

귀하가 뉴욕시에 등록된 유권자라면 11월 2일 투표할 수 있고 또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소는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등록 유권자들은 보통 선관위(Board of Elections 또는 BOE)로부터 해당 투표소 주소가 인쇄된 안내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만약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귀하가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투표 자격이 있는지, 어디서 투표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면 866-VOTE-NYC로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 유권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시행되는 총선을 위한 유권자 등록은 이미 늦었습니다(2010년 10월 8일이 마감). 그러나 미래 있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지금 등록하십시오! 유권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선관위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서는 선관위 사무소에서 직접 교부 받거나 전화로 신청, 또는 선관위 웹사이트 [www.vote.nyc.ny.us](http://www.vote.nyc.ny.us)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제 유권자 등록이 만료됐을 수도 있나요?

유권자 등록에는 만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한 다음 선관위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유권자 등록이 취소됐을 수도 있습니다.

### 지난번 투표를 한 다음 뉴욕시 내에서 이사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뉴욕주 법에 따라 이사를 한 다음에는 25일 내에 선관위에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사를 한 다음 10월 8일 전까지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로 가서 선서투표용지(affidavit ballot)를 통해 투표를 해야 합니다. 주소변경 신청은 새로운 유권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Voting information that has changed”란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주소와 전 주소를 기입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정당에 해당하는 공란에 체크(이미 정당 등록이 되어 있어도 다시 해야 합니다)를 한 후 다른 기재사항도 빠짐없이 기입하십시오.

### 총선에서는 무엇에 대해 투표하나요?

뉴욕 시장은 올해 뉴욕시 현장 개정을 고려하고자 현장수정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유권자들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투표해야 합니다. 이 뉴욕시 유권자 공식 안내서는 이들 사안에 대해 유권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파와 무관하게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nyc.gov/charter](http://www.nyc.gov/charter)를 참고하세요.

올해 선거는 미 전국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뉴욕주 전역에 걸쳐서 유권자들은 미 연방 상하원의원은 물론이고 뉴욕주 주지사, 감사관, 검찰청장, 주의회 상하원의원 등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선거유세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관련

링크는 [www.nycfb.info/VoterGuide](http://www.nycfb.info/VoterGuide)를 통해 제공됩니다. 또한 여러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서 사법부 선출직 후보들의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사법부 선출직 후보들에 대한 정보는 뉴욕주 통합법원 시스템의 사법부선거관리센터(JCE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법부 유권자 안내서를 [www.nycourts.gov/vote](http://www.nycourts.gov/vote)에 들르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장에 갔는데 유권자 명부에서 제 이름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귀하가 자신의 주소지가 소속된 어셈블리(assembly)와 선거구에 해당하는 줄에 섰는지 확인하십시오. 선거구 번호는 이 안내서에 부착된 우편 라벨과 선관위가 모든 등록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우편엽서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 요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올바른 줄에 섰음을 확인한 다음에도 유권자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면 선관위에서 귀하의 유권자 등록신청서를 아직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귀하가 투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얼마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 요원에게 선서투표용지(affidavit ballot)를 달라고 요청한 후 요원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에서는 제반 기록을 확인한 다음 귀하가 투표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유효 투표로 인정하게 됩니다. 투표자격 미달인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알리는 통보지와 미래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11월 2일에 투표소로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 당일날 투표소에 갈 수 없을 경우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우편 또는 직접투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으시려면 선관위에 전화하여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 발송을 요청하시거나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으십시오. 그 다음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지역 선관위 사무실로 보내십시오. 신청서는 2010년 10월 26일 자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선관위는 귀하에게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낼 것입니다. 이 용지를 작성하여 우편으로(11월 1일 자 소인까지 유효) 해당 보로의 선관위 사무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부재자 직접투표는 10월 초부터 11월 1일 사이 주중(월~금)과 선거일 직전 주말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해당 보로 사무실에서 실시됩니다.

참고: 만약 부재자 투표용지 우편신청 기한이 지났거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 가지 못할 경우 귀하를 대신하여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보로 사무실로 보내시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기입된 신청서와 기표가 된 투표용지는 반드시 선거일 오후 9시까지 보로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올해 새로운 투표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10년도 총선  
11월 2일 화요일

투표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BOE)로 연락 문의하십시오. 전화번호 866-VOTE-NYC (866-868-3692, 청각장애인은 212-487-5469)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vote.nyc.ny.us](http://www.vote.nyc.ny.us)를 통해 연락하실 수 있으며, 지역 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부사무실**  
32 Broadway, 7th Floor  
New York, NY 10004  
(212) 487-5300

**맨하탄**  
200 Varick Street, 10th Floor  
New York, NY 10014  
(212) 886-2100

**브루클린**  
345 Adams Street, 4th Floor  
Brooklyn, NY 11201  
(718) 797-8800

**퀸즈**  
126-06 Queens Boulevard  
Kew Gardens, NY 11415  
(718) 730-6730

**브롱스**  
1780 Grand Concourse, 5th Floor  
Bronx, NY 10457  
(718) 299-9017

**스테튼 아일랜드**  
1 Edgewater Plaza, 4th Floor  
Staten Island, NY 10305  
(718) 876-0079

## 어디서 투표할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선관위 웹사이트 [www.vote.nyc.ny.us](http://www.vote.nyc.ny.us)를 방문하여 투표소 찾기 페이지를 활용하거나 귀하가 거주하는 보로의 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세요(주소, 연락처는 아래 참조).

## 유권자로서의 권리

다음 경우에 해당된다면 귀하는 2010년 11월 2일 총선에서 투표하실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2010년 10월 8일 전에 뉴욕시에서 유권자 등록을 완료.
- 11월 2일 오후 9시 전까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투표소 안에 도착.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투표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훈련을 받은 선거관리 요원을 포함하여 귀하가 지정하는 누구로부터든(고용주나 노조대표는 제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통역이 필요할 경우 선관위 제공 통역사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어느 투표소에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고 어떤 언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면 866-VOTE-NYC로 연락 문의하십시오.
- 선거관리 요원들에게 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이 유권자 안내서를 포함하여 귀하가 원하는 자료를 기표소 안으로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다음 모든 자료를 반드시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스캐너가 고장 나더라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선거구 투표소 유권자 명부에 귀하의 이름이 없을 경우에도 “선서투표용지”(affidavit ballot)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최근에 유권자 등록을 했다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실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를 원치 않을 경우 선서투표용지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뉴욕시 유권자 안내서

- 1 올해 초 뉴욕시장은 시 헌장 개정을 고려하고자 시헌장 개정위원회(CRC)를 소집했습니다. 심의 끝에 CRC는 두 가지 사안을 내놓고 이를 뉴욕시 유권자들에게 표결을 의뢰했습니다. 이 2010년도 뉴욕시 유권자 공식 안내서는 시 헌장 개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 사안에 대해 유권자들이 11월 2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파와 무관하게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됐습니다.
- 2 올해 선거는 미 전국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뉴욕 주 전역에 걸쳐서 유권자들은 연방 상하원의원은 물론이고 뉴욕주 주지사, 감사관, 검찰청장, 주의회 상하원의원 등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안내서는 연방 및 주 단위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관련 링크는 [www.nyccfb.info/VoterGuide](http://www.nyccfb.info/VoterGuide)를 통해 제공됩니다.
- 3 뉴욕시민들은 올해 새로운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종이 투표용지를 기입한 다음 스캐너에 삽입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투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안내서 4~5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www.votethenewwayny.com](http://www.votethenewwayny.com)에서 새로운 투표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4 여러분의 참여가 없다면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이 유권자 안내서를 읽어보시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숙지한 다음 11월 2일 꼭 투표하십시오.



## 알고 계십니까?

귀하의 등록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투표 방식과 새로 사용할 기계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뉴욕시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www.vote-ny.com](http://www.vote-ny.com)을 방문하십시오. 이 안내서 4~5페이지도 새로운 투표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면 [www.votethenewwayny.com](http://www.votethenewwayny.com)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

선거재정위원회(CFB)는 선거과정에서 뉴욕시민들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소속 비당파 독립기관입니다.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선거재정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선거재정위원회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좀더 많은 시민들이 뉴욕시 공직에 출마하도록 돕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선거재정프로그램은 뉴욕시민들이 소액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그와 동일한 액수의 공공기금을 조달함으로써 고액 기부나 무한정한 선거자금 지출에 따른 부패 가능성 및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다음 활동을 통해 위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시 정부 선거에서 선거운동자금 관련 공식정보를 실시간으로 알기 쉽게 제공
- 선거운동자금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에게 공공기금을 제공하는 자율적인 선거운동자금 프로그램을 운영
-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거자금법을 집행
- 비당파적인 뉴욕시 유권자 안내서를 발간 및 배포
- 시 정부 출마후보자들의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

지방정부 공직 출마 후보자들은 선거자금법에 따라 자신들의 선거자금 출처와 그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이 정보를 웹사이트 [www.nyccfb.info](http://www.nyccfb.info)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합니다. 출마 후보자들은 또 지방정부 선출직 공무원들이 대가성 기부를 받는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 정부 계약을 따낸 회사나 개인에게 적용되는“비즈니스 활동(Doing Business)”관련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후보들은 선거자금 지출 한도를 지키는데 동의하는 후보자들에게 공공기금을 통해 매칭펀드를 지원하는 선거재정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매칭펀드 프로그램은 후보들이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들에게 의존하거나 본인의 개인 재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도의 공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 정부 공직에 출마 의향이 있거나 선거자금법이 어떻게 뉴욕시 지방선거를 좀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선거재정위원회 (New York City Campaign Finance Board, 40 Rector Street, 7th floor, New York, NY 10006)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www.nyccfb.info](http://www.nyccfb.info))를 방문하십시오. 선관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info@nyccfb.info](mailto:info@nyccfb.info)로, 이 유권자 안내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VoterGuideInfo@nyccfb.info](mailto:VoterGuideInfo@nyccfb.info)로 문의하십시오.

###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

Joseph P. Parkes, S. J.  
위원장

Art Chang, Richard J. Davis,  
Courtney C. Hall, Mark S. Piazza  
위원

Amy M. Loprest  
사무국장

Shauna Tarshis Denkensohn  
사무차장

Sue Ellen Dodell  
법률고문

Elizabeth Bauer  
행정서비스 국장

Daniel Cho  
후보서비스 국장

Eric Friedman  
공보담당관

Peri Horowitz  
특수 법률 및 정책준수감독 국장

Diana Lundy  
전산실장

Kenneth O'Brien  
시스템관리 담당 국장

Julius Peele  
회계 및 감사 담당 국장

Elizabeth A. Upp  
출판국장

Peggy A. Willens  
관리분석 및 운영담당 국장

이 유권자 안내서는 뉴욕시 선거재정관리위원회의 출판국(Elizabeth A. Upp, Crystal Choy, Winnie Ng, Todd Raphael, Andrew Sauter 및 보조요원 Katharine Loving, Mark Setting)이 제작합니다.

뉴욕시 2010년 총선 유권자 안내서. 저작권 © 2010: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 판권소유. 표지 및 책자 디자인: D-Zine, Inc. U.S.A.

# 어떻게 투표하나요?

1



## 투표용지를 받으세요

-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본인 서명을 한 후 선거관리 요원으로부터 종이 투표용지와 유권자 카드를 받으세요.
- 귀하께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개인 전용 가리개도 받으세요.
- 개별 기표소로 가서 투표를 하시거나 특수기표장치(BMD) 사용 요청을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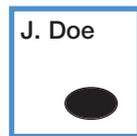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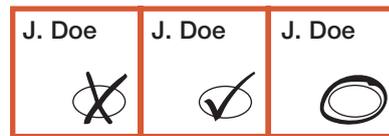
## 투표용지 양면에 모두 기표해주세요

- 주어진 펜으로 선택사항 옆에 있는 작은 타원을 빈 공간 없이 꼭 채우세요.

맞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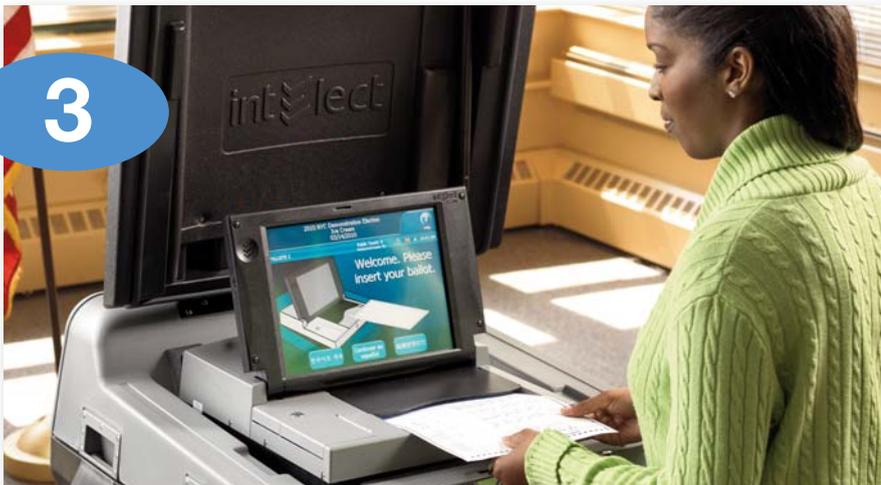


틀림



- 투표용지의 타원 속에 "X" 나 "✓", 또는 일체의 다른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출마 후보자 이름을 써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원 속을 채워 넣고 후보자 이름을 써넣으세요.
- 투표용지를 절대로 접지 마세요.

3



## 투표용지를 스캔하세요

- 기표하신 투표용지와 유권자 카드를 갖고 스캔장으로 가세요.
- 스크린 상에 버튼을 눌러서 귀하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세요.
- 이제는 이미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스캐너 속에 삽입해야 합니다. 스캐너 삽입은 어떤 방향으로든 할 수 있고 앞뒤 어떤 면으로 삽입해도 상관없습니다. 투표가 완료되면 스캐너가 그 사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 특수기표장치(BMD) 사용하기

특수기표장치는 2가지 방법으로 투표용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투표용지 내용을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 투표용지 내용을 오디오 헤드폰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특수기표장치는 기표를 하는데 다음 4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터치스크린
2. 키패드(점자)
3. 빨대식(sip & puff) 기표장치
4. 발 조작식(Rocker Paddle) 기표장치

특수기표장치를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하시려면 다음 순서를 따르세요:

- 어떤 방법으로 투표용지 내용을 이해하고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 투표용지를 용지입력구에 삽입하세요.

-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세요.
- 특수기표장치가 기표를 하고 기표한 사항을 검토하는 모든 과정을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 선택 내용을 바꾸려면 후보 혹은 투표안건 버튼을 누르고 새롭게 선택하고자 하는 대상을 택하면 됩니다. 요약 내용 스크린으로 돌아가려면 "NEXT"(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 기표한 투표용지를 인쇄하려면 "Mark Ballot"(투표용지 기표) 버튼을 누르세요.
- 인쇄된 투표용지와 유권자 카드를 갖고 스캐너가 설치된 장소로 가세요.
- 스캐너에 투표용지를 삽입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선거관리 요원이 도와드립니다.





## 다음 사항을 잊지 마세요...

- 투표용지 뒷면을 꼭 읽어보세요! 뉴욕시 현장 개정과 관련된 질문이 뒷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 모든 후보와 투표안건 사항에 투표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귀하가 일부 출마 후보나 투표안건에 대해 기입을 빠뜨렸더라도 스캐너는 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완성 투표”라고 부릅니다. 모든 공란에 표시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 하십시오. 스캐너가 일단 귀하의 투표용지를 처리한 다음에는 다시 기입할 수 없습니다.
- 타원 속을 완전히 채워 넣으세요. “X”나 “√” 같은 표시를 써넣지 마세요.
-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한 번에 한 후보씩만 선택하세요. 투표용지 각 줄의 첫 칸에는 항상 몇 명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만 선택하세요”라고 써있지만 일부 경우는 “둘” 또는 “셋을 선택하세요”라고 써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기표방법을 주의 깊게 읽어서 무효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기재해 기명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후보에 투표하길 원하신다면 (1) 기명투표 칸에 있는 타원에 표시를 하고 (2) 같은 박스 안에 후보자의 이름을 써넣거나 스탬프를 찍으시면 됩니다.
- 대부분의 투표소에는 한 대 이상의 스캐너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유권자 카드를 선거관리 요원에게 주면 어떤 스캐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 줄 것입니다.

## 문제와 해결책

투표용지 기입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투표용지에 기입한 사항을 지우거나 고치지 마세요. 대신 선거관리 요원에게 새로운 투표용지를 달라고 요청하세요. 투표용지는 유권자 한 명당 3장까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기입했는데(특정한 안건에 너무 많은 타원 표시) 어떻게 하나요?

귀하가 필요 이상으로 기입을 했을 경우 해당 후보 또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투표용지를 스캐너에 삽입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선거관리 요원에게 새로운 용지를 달라고 요청하세요. 잘못 기입된 투표용지를 스캐너에 삽입했다면 스크린에 오류 메시지와 함께 두 가지 선택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귀하가 “투표 중지 – 투표용지 반환”(Don't Cast – Return Ballot)을 선택하면 스캐너는 귀하의 투표용지를 반환하고 귀하는 선거관리 요원에게 새로운 용지를 달라고 요청하여 새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투표 진행”(Cast Ballot) 버튼을 누르시면 스캐너는 귀하의 투표용지 처리를 계속할 것이고 잘못 기입된 항목에 한하여 무효로 처리될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정확하게 기표한 다른 사항들은 모두 유효처리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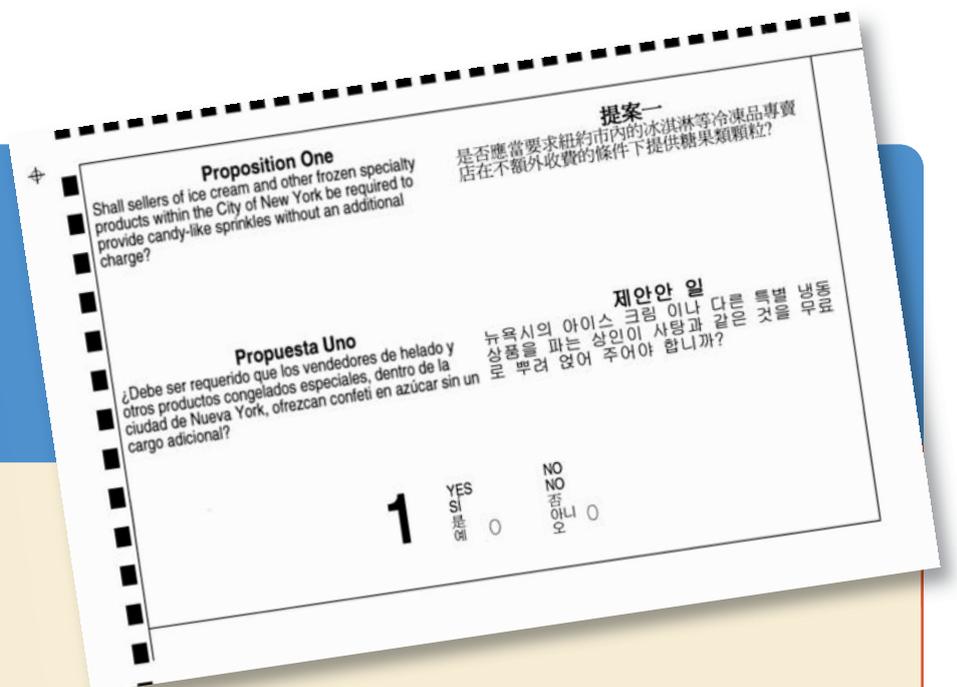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종이 투표용지를 제대로 못 읽겠어요.

개별 기표소 안에 큰 글씨로 쓰여진 용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수기표장치(BMD) 사용을 요청하거나 투표장에 같이 온 동행자에게 도움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 시 현장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수정안 관련 질문은 투표용지 뒷면에 있습니다.
- 각 질문에 대해 “Yes” 아니면 “No”를 결정하고 답변에 해당하는 타원을 채워 넣으십시오.

현장 수정안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뒷장을 참고하세요.



# 뉴욕시 헌장 주민투표안



뉴욕시장이 시 헌장 개정을 위해 소집한 헌장개정위원회(CRC)는 올해 유권자 표결을 요하는 두 가지 사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안을 내놓기 전에 CRC는 다수의 회의와 공청회를 갖고 관련 보고서도 간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 회의, 공청회 회의록과 보고서 전문은 CRC 웹사이트 [www.nyc.gov/charter](http://www.nyc.gov/charter)에서 찾으시거나 311로 전화하여 사본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각 주민투표안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식 문서(점선 안의 박스)
- CRC가 제공한 공식 요점을 선거재정위원회에서 알기 쉽게 정리한 요약본

- CRC 공청회, 언론, 선거재정위원회 제출 자료 등에서 각기 다른 단체들이 내놓은 수정안 찬반론
- 이해당사자 그룹들이 제출한 “찬성론” 및 “반대론” 요약(공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리)
- 선거재정위원회 마감기일 내에 제출된 모든 찬반론(이 안내서 인쇄판 마감기일 이후에 접수된 찬반론을 포함한 모든 찬반론 전문은 [www.nycffb.info/VoterGuide](http://www.nycffb.info/VoterGuide)을 참조)

이 책자에 포함된 정보는 선거재정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제안된 각 사안에 대한 모든 찬반론을 대표하지도 않음

## 1번 질문: 임기 제한

### 1번 질문

**임기 제한: 이 주민투표안은 시 헌장의 다음 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

- 선출직 시 공무원이 계속 같은 직에 유임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인다.
- 2010 총선이나 그 이후에 처음으로 당선되는 초선 공직자에게만 2회 연임기간을 적용한다.
- 시 의회에서 현직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기제한 조항을 개정한 다음 계속 공직 근무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제안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1번 질문은 시 헌장에 있는 임기제한 조항을 개정해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뉴욕시 유권자들은 1993년 선출직 시 공무원들에 대한 임기한도를 2회로 제한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후 1996년 유권자들은 임기한도를 3회로 연장하는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시 의회에서는 임기제한법의 합법적 개정을 통해 임기한도를 2회에서 3회로 늘린 바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시장, 공익대변인, 감사관, 보로장, 시의회 의원 등은 4년간의 임기를 3회까지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질문은 연임한도를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 2회 이상 연임금지 조항은 2010년 11월 2일 총선이나 그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되는 시 공직자들에게만 적용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1번 제안은 시 의회에서 기존 선출직 공무원들을 위해 임기제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시 의회는 향후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한도를 변경시키는 권한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 1번 질문에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근거

- 선출직 시 공무원들의 연임한도를 2회로 제한하는 안은 유권자들에 의해 이미 두 차례나 통과된 바 있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찬성표는 뉴욕시 유권자들에 의해 벌써 승인을 받은 2회의 임기한도로 되돌릴 것입니다.
- 뉴욕시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공무원들이 3회나 연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정부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 독립적 사고력을 갖고 있으며 창의력이 넘치는 시민 정치인이 더 필요합니다.
- 공무원이 한 자리에서 오래 연임하면 할수록 정부 내의 이해당사자 그룹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따라서 주민들의 민생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 미 대통령과 대부분의 주지사, 다수의 카운티 및 시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도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이 주민투표안은 시 의회 의원들이 자신들과 현직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번 질문에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 근거

- 임기한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투표안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임기제한 반대론자들은 2회 임기한도보다는 현행의 3회 임기한도를 지속시키기 위해 반대표를 던져야 합니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해주는 정치인들을 계속 선출할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유권자들의 이해를 잘 대변해준다면 이들은 3회에 걸쳐 유임시킬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 뉴욕시에는 예산안 수립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시장이 있습니다. 3회에 걸친 임기가 필요한 이유는 시 의회 의원들이 그 기간 동안 충분한 경험을 쌓고 인간관계를 다지며, 장기계획을 수립할 능력을 갖게 되며 또 시장의 권력에 맞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 임기를 맞는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민생보다는 퇴임 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더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무원에게 퇴임 후 일자리를 제시하는 사업체일수록 더 많은 특혜를 받을 것임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2회 이상 연임금지법은 그런 추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 1번 질문은 시 의회가 임기한도제한 법안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시 헌장은 어떤 이슈가 시 의회의 입법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공개 입장표명 코멘트 발췌록(찬성 입장)

뉴욕주민들은 정부가 유권자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던 바 있다. 유권자들에게 2회 임기한도 제한법에 대해 표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안에 대해 우리 헌장개정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첫 번째 주민투표안은 2010년 선거나 그 이후에 선출된 공무원들에게 2회 임기한도를 적용하고 시 의회가 현직 선출직 공무원들의 한도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장기적으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것이며, 이는 현재 공무원들에게 미칠 영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부 운영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1993년 임기한도 주민투표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Matthew Goldstein, CRC 의장

1번 제안은 임기한도 이슈에 관해 표결을 할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주는 것이다... 2번 제안은 뉴욕시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구조, 관리, 운영방식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는데 유권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다. 본인은 이들 주민투표 질문이 지향하는 목적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

—John H. Banks, CRC 부의장

시 의회 다수 의원들은 2009년 주민들의 뜻에 반해 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저지르고... 자신들이 3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유권자들의 의사를 짓밟았다. 이는 그 전에 유권자들이 뉴욕시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한도를 2회로 제한하는 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거로 되돌린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정안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주민투표에서 결정된 사항을 되살린다는 의미를 갖는다.

—Jose A. Padilla, Jr.

뉴욕시 유권자들은 선출직 공직자 임기를 2회로 제한한다는 데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것도 두 차례나 말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의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시장과 시 의회는 유권자들의 뜻에 반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을 뿐이다...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평생에 걸친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며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를 퇴임시키는 가능성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

—Theresa Scavo, 2009년도 시 의회 후보

헌장개정위원회가 2회 임기한도법 발효일자를 2021년까지 연기하자고 주장하는데 실망을 금치 못했지만 그럼에도 1번 주민투표안은 현행 시스템보다는 훨씬 나은 대안을 제공한다... 내부 인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려는 목적으로 개혁 발효일자를 2021년으로 미뤘지만 말이다. 정치에서 그건 거의 평생이나 다름없다. 임기한도법의 반대론자들은 유권자들이 이런 음모에 대해 염증을 느껴 법안 부결을 시킬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유권자들이 임기한도법에 반대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현직에서 평생 유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1번 투표안은 시 의회 의원들이 지난 2008년에 뻔뻔하게 그랬듯이 임기한도를 갖고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임기한도법의 적들을 물리치고 그럼으로써 평생 공직에 머무르는 정치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1번 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Henry J. Stern, 뉴욕 시민사회단체

### 공개 입장표명 코멘트 발췌록(반대 입장)

본인은 시 의회 의원으로서 유권자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3회 임기한도 제한법에 반대표를 던졌었다... 현 주민투표안은 의도는 좋으나 실수를 범하고 있다. 모든 뉴욕시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3회까지 연임해야 한다. 뉴욕시 시정의 복잡성과 규모를 감안하면 공무원들의 능력 발휘를 위해 장기간에 걸친 연임이 필요하다.

—Gale A. Brewer, 시 의회 의원

본인은 오랜 시일에 걸쳐 임기한도법에 반대해왔다. 그 이유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후보가 몇 차례 연임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계속 공직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유권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임기제한법은 축적된 경험을 무의미하게 하고 선출직 정치인들이 퇴임 후 정치권에서나 바깥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여념이 없게 함에 따라 이들이 민생에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연임한도를 3회까지 연장시켜주는 현행법이 그런 문제점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 이를 다시 2회로 줄인다는 것은 크나큰 실수가 아닐 수 없다.

—Oliver Koppell, 시 의회 의원

우리 연맹에서는 임기한도법에 줄곧 반대해왔다. 정치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직 정치인이 주민들의 민생을 도외시키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무관심해 할 경우 차기 선거에서 탈락시키는 것이다... 많은 경우 마지막 임기를 맞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차기 선거 당선이나 정부 일자리 확보를 위해 자기 개인의 업적을 돋보이게 하는 데만 급급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상호협력이나 합의 분위기 조성에 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장기간 같은 직에 근무할 경우 정치인들은 공공정책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유권자들에 혜택을 가져다 줄뿐더러 비선출직 보좌관들에게 의존해야 할 필요도 없게 된다.

—뉴욕시 여성유권자 연맹

본인은 시 의회 의장에 재직할 바 있고 따라서 그런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시장과 같은 고위 직책의 임기제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한편 시 의회에서의 임기제한은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필요한 힘의 균형을 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이런 힘의 균형은 1989년 시 헌장 개정을 한 다음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었다... 시 의회 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최선의 방법은 차기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것이다.

—Peter F. Vallone, 전임 시 의회 의장

헌장개정위원회는 중요한 개혁의 발효일자를 과도하게 늦춰서 원래 개혁의 본 의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 그럼으로써 임기한도를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시 의회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임기한도를 변경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의 취지 또한 무의미하게 되어버렸다.

—Howard Charles Yourow, S.J.D.

## 2번 질문: 선거 및 정부 행정

2번 질문은 시 현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 독립 선거운동 지출내역 공개

공직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출마 후보들은 선거유세를 하고 유권자들과 소통하는데 자금을 조달하고 지출합니다. 각 시 정부 선출직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자금 조달 및 지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CFB)에 보고되고 이 정보는 다시 공개됩니다.

개인이나 단체(예를 들어 정당, 노조, 기업 등)에서 특정 후보나 지방정부의 특정 투표사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할 경우 이를 "독립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지출에 대해서는 현재 선거재정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예로는 환경단체가 시 의회 후보를 지지하라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자동전화(녹음메시지) 선거운동, 특정후보의 보로장 출마에 반대하는 기업이 TV 광고를 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번 질문은 뉴욕시 선거에서 독립 지출을 한 개인이나 단체가 그 내역을 선거재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이를 접수해 나중에 일반에 공개하게 됩니다. 현재 제안은 1천 달러 이상의 독립 지출을 한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이 사실을 선거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5천 달러 이상의 독립 지출을 한 단체는 자금의 출처도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거운동 책자, 광고 등에서도 그 비용을 부담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립 지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액의 벌과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천 지지 청원서 서명

뉴욕시에서 출마 공천을 받으려면 후보는 지역사회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원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몇 명의 서명이 필요한지는 후보자가 출마하는 공직에 따라 다르고 후보자가 정당에 속하는지, 무소속 후보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2번 질문은 뉴욕시 단위 공직의 경우 그런 서명인 수를 3,750명, 보로 단위의 경우 2천 명, 시 의회의 경우(예비선거 및 총선 포함) 450명으로 줄인다는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전과 대비할 때 많은 경우 50%를 감소한 숫자입니다.

### 유권자 지원 및 선거재정위원회

유권자지원위원회(VAC)는 뉴욕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권장하는 기관입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시 정부에서 설립한 비당파적 독립기관으로서 유권자 안내서를 발행하고 후보자 토론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권자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다섯 명의 이사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번 질문은 유권자지원위원회 조직을 선거재정위원회로 이관하고 이를 유권자지원조언위원회(VAAC)로 개명하며, 위원 수도 16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시 현장을 개정하여 선거재정위원회 이사회 위원들의 임기 개시일을 4월 1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한다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해상충법

뉴욕시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이해상충과 관련된 법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COIB)는 이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시 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의 경우 시 정부와 거래를 하는 기업으로부터 값비싼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해상충 규정을 어길 경우 벌과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질문은 모든 공무원들이 이해상충법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COIB에서 부과하는 벌과금 최고액을 1만 달러에서 2만5천 달러로 상향조정 하는 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개정안은 공무원이 규정 위반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거뒀을 경우 COIB에서 이 이익금을 정부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시 정부 행정중재재판

다수의 시 정부 기구들은 시 법률 및 행정조치 위반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고 합니다. 이들 공청회는 행정법 판사가 주재하는 해당 기구 내 비공식 재판(중재재판)이 열리기 전에 개최됩니다. 행정재판-공청회국(OATH) 또한 시 정부 기구들을 위해 그러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OATH에서 활동하는 행정법 판사들은 일정한 전문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5년 임기에 동안 임명이 되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

2번 주민투표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일부 시 중재재판을 OATH(다만 세금심사청구재판, 국세위원회, 표준심사청구위원회 등을 포함한 행정세심사청구국 OATA 주관 사항은 제외) 주관으로 통합시키게 됩니다. OATH로 이관되어 오는 중재재판 건을 심의하는 행정법 판사들의 임명요건 및 임기에 대해 OATH의 최고 행정법 판사는 각기 다른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시 정부 기구 내 중재재판소의 OATH 이관에 대해 정책조건을 할 수 있는 조언위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또 2번 문항을 통해서 소비자국(DCA)은 관할 하의 모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 시 정부 보고서 기준 및 조언위원회

시 법에 따라 시 정부 기구들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의사결정 권한을 갖지 않은 각종 조언 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2번 질문은 시 정부 발행 보고서와 각종 조언위원회의 기능, 유용성, 가치 등을 검토하는 특별 위원회(시 의회 및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특정 보고서와 조언위원회의 축소 및 폐지 여부를 시 의회에 권고를 내며, 이에 대해 의회는 수용, 거부 여부를 120일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권고 내용을 거부할 경우 시장은 이 결정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이를 다시 2/3 다수결에 따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120일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권고안은 발표됩니다.

### 시설부지 표시 지도

시 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의료, 사회복지, 대중교통, 쓰레기수거처리 제공해야 합니다. 이들 시설의 부지 위치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 현장은 시정부 소유의 모든 시설의 위치, 현재 사용용도 및 미래 계획과 주-연방정부 산하의 의료 및 사회복지 기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은 이 지도에 시 정부가 소유하지 않은 공공부지와 민영 공공교통, 그리고 쓰레기수거처리 시설들의 위치도 표시할지 묻고 있습니다.

## 2번 질문 선거 및 정부행정: 이 주민투표안은 시 현장의 다음 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

- **독립 선거운동 지출내역 공개:** 후보자 본인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시 정부 선거 및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제공한 정치자금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 **공천 지지 청원서 서명:** 시 정부 선출직에 출마한 후보가 받아야 하는 청원서 서명자의 수를 줄인다.
- **유권자 지원 및 선거재정위원회:** 유권자지원위원회(VAC) 기능을 선거재정위원회로 이관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유권자 지원 업무를 통합하며 선거재정위원회 이사회 위원들의 임기 개시일을 변경한다.
- **이해상충법:**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 이해상충법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시 정부의 이해상충법 위반자에 대한 벌과금 최고액을 상향조정 하며, 위반사례 시 얻은 이익금을 정부에 반환하게 한다.
- **시 정부 행정중재재판:** 시장 직권으로 행정중재재판과 재결 건을 행정재판-공청회국(OATH) 산하로 통합하는 것과 소비자국(DCA)이 모든 관련 위반사건을 자체적으로 재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 **시 정부 보고서 기준 및 조언위원회:** 시 정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와 각종 조언위원회의 기능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에서 지속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능의 축소, 폐지를 시 의회에 권고하게 한다.
- **시설부지 표시 지도:** 시 정부 및 민간업체들이 소유·운영하는 교통, 쓰레기수거처리 시설 등의 위치를 시에서 제작하는 시설부지 표시 지도에 포함한다.

이 제안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2번 질문에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근거

### 독립 선거운동 지출내역 공개

- 현 주민투표안은 뉴욕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유권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합니다.
- 유권자들이 선거유세 기간 동안에 접하는 우편물, 광고, 기타 홍보에 대해 누가 자금을 제공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 연방단위 선거에서 독립 선거운동 지출 한도를 폐지한 미 대법원 *Citizens United* 판결결과로 기업과 노조의 선거자금 지출이 전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 주민투표안이 통과되면 이런 활동에 대해 보다 투명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공천 지지 청원서 서명

- 뉴욕시에서 공천을 받는데 필요한 청원서 서명자의 수를 줄이면 더욱 쉽게 출마할 수 있게 되며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덜 수 있게 됩니다.
- 보다 많은 후보들이 출마할 수 있게 돕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 더이상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시 의회 후보들이 더 많은 수의 공천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 유권자 지원 및 선거재정위원회

- 현재 선거재정위원회와 유권자지원위원회에서 별도로 벌이는 유권자 교육및지원활동을 통일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해상충법

- 뉴욕시 모든 공무원이 이해상충위원회(COIB)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교육 방식은 관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공무원들이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대신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입니다.
- 윤리규정 위반 사안에 대한 최고 벌과금 액수가 1989년 이래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 시 정부 행정중재재판

-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절차를 동일화 하면 이런 중재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들이 좀더 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중재재판을 재판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한 기관이 아니라 OATH에서 개최하면 공정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 시에서 열리는 모든 중재재판을 OATH가 개최할 경우 모든 중재재판 관련 행정업무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시 정부 보고서 기준 및 조언위원회 구성

- 불필요한 위원회와 시 정부 제출 보고서를 없애면 시 정부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일부 보고서와 조언위원회는 구시대적이고 중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용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시설부지 표시 지도

- 교통, 쓰레기수거처리 시설 등을 지도에 삽입하면 특정 지역사회에 이런 시설들이 이미 많은 경우 이 사실을 정책입안자들과 주민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 또한 정책입안자들이 이 지도를 통해 이런 시설이 소수 지역사회에만 집중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새로운 시설을 다른 곳에 입주시킬 수 있게 됩니다.

## 2번 질문에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 근거

### 독립 선거운동 지출내역 공개

- 개인과 단체들이 세세한 선거운동 지출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 이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길 원치 않게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개인이나 단체들은 위협이나 보복이 두려워 선거운동 책자나 광고에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길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립 선거운동자금 지출은 뉴욕시 선거에서 항상 있어왔던 전통입니다. 미 대법원의 *Citizens United* 판결 또한 해당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 공천 지지 청원서 서명

- 공천 지지를 위한 청원서에 서명자 수를 줄일 경우 지역사회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쉽게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 어떤 개정안도 후보 공천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 유권자 지원 및 선거재정위원회

- 유권자지원위원회(VAC)의 구조조정은 이 기구의 지역사회 내 인지도를 떨어뜨리고 유권자 참여와 유권자 등록을 높이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이해상충법

- 교육훈련 강화, 벌금 상향조정,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등 아무리 규정을 바꾼다 해도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청렴의 정도는 타고 나는 것이지 규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훈련 강화는 정부 재정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 시 정부 행정중재재판

- 이 이슈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 이 법안은 사법부 독립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번 문항에 따르면 중재재판 행정법관 사들이 OATH 소속 행정법관사들만큼 높은 직업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시 정부 보고서 조건 및 조연위원회 구성

- 새로운 위원회를 창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시장이 각 시 정부 기관들에게 자체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보고서나 각종 조연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 의회에서 일부 위원회나 보고서 의무를 폐지하도록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에 따라 설립될 위원회는 폐지 권고를 하게 될 보고서나 위원회보다도 운영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위원회가 무기한 운영될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 시설부지 표시 지도

- 뉴욕시는 이들 시설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각 지역사회는 이들의 입주를 결사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통 및 쓰레기수거처리 시설을 지도에 넣는 것은 행정서류 처리과정의 변경에 불과하고 실제로 새로운 시설이 어디에 설립될 것인지에 대한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 공개 입장표명 코멘트 발췌록(찬성 입장)

2번 질문을 통해 유권자들은 선거자금 지출내역의 완전 공개, 공천기회의 확대, 이해상충 규정의 강화 등 중요한 측면에서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 청렴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치는 유권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행동할 때만이 정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번 시 현장 개정 안에 찬성표를 던져서 주민들의 의사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Matthew Goldstein, 시 현장 개정위원회 회장

공천서명자 수 개정을 통해 무소속 후보들이 정당 공천 후보들과 동등하게 처우 받을 수 있게 된다는데 대해 반가움을 금치 못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정당 공천을 받은 잘 알려진 후보들 뿐만 아니라 무소속 독립 후보들의 목소리를 높여야만 한다. 시 의회에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에게 450명의 서명을 받도록 그 조건을 낮춘 것은 시 전체에 걸쳐 무소속 후보들의 수를 크게 늘려줄 것이다. —Mark Axinn, 뉴욕 자유주의당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뉴욕시 내 유색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몇몇 지역에 유해시설이 집중 설립되었다. 더구나 이들 지역에는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쓰레기 집하처리장, 버스종점 등 각종 공해소음을 내는 시설들이 들어섰다. 이런 상황은 이들 구역에 심각한 환경피해를 초래했고 따라서 어린이 천식환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공공보건 문제가 발생했다. 이 주민투표안이 언급하는 지도에는 현재 시 운영 시설들만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밀집 시설이 미치는 환경적 여파는 시 운영 시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주 정부, 공공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공해시설도 우리 지역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뉴욕 주민들은 우리 시의 일부 지역들이 얼마나 공해에 시달렸는가를 마침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ddie Bautista, 뉴욕시 환경정의연맹

미 전역에 걸쳐 수많은 시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시키고 있다. 반면 뉴욕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는 오랜 기간에 걸쳐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실시를 요구해왔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30만에 달하는 모든 시 공무원들에게 온라인 및 자동훈련을 마침내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서 훈련받은 교육전문가들이 실시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시 정부 기관에서 실시될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Mark Davies,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

다수의 출마 후보들은 법에서 정해진 공천 서명자 수를 채울 수 있을만한 자금력이 없어서 번번이 출마 포기를 해야 했다. 공천 청원서 서명자 수는 당연히 줄여 마땅하다... 개인과 민간단체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금을 지출하고 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정부의 실패라 할 수 있다....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고 후보와 그 후원자들이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선 완전한 선거자금 지출내역 공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Tyrrell L. Eiland, New Voice Political Action 위원회 의장

2010년도 시 현장 개정위원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시 정부를 만든다는 목표 하에 설립되었다. 주민투표 2번 질문에 나와 있는 이 개혁안은 바로 이런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2번 주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시 현장을 21세기에 걸맞게 개정하고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주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는 시 정부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다. —Stephen J. Fiala, 시 현장 개정위원회 위원장

2010년 대법원의 *Citizens United* 판결은 기업이나 다른 외부 단체의 독립지출을 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던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지출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들 기업 및 외부 단체들의 자금력이 개인들에 비해 훨씬 풍부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이 지역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엄청날 수 있다고 하겠다. 선거에서 누가 어떤 후보를 후원, 반대하려는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지 유권자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Daniel R. Garodnick, 시 의회 의원

벌금 최고한도를 높이면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에서 윤리관련 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데 전보다 훨씬 큰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미 일부 시 정부에서는 윤리법률을 개정하여 법 위반 행위를 통해 부당 취득한 금전을 정부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먹은 돈 토해내기” 법은 많은 경우 부당행위를 통해 취득한 돈 액수가 벌금 최고한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중요한 부정부패 저지 수단이 될 수 있다. —Wayne Hawley,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

우리 뉴욕 공공정책연구그룹(NYPIRG)에서는 아래 다섯 가지 조치가 중요한 개혁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시 정부 선거에서 독립선거운동 지출내역 공개를 강화하는 것, 공천 청원서에 필요한 서명자 수를 줄임으로써 시 정부 선출직 출마 후보자들의 요건을 간소화하는 것, 기존의 유권자지원위원회(VAC)를 선거재정위원회로 편입시킴으로써 유권자 등록을 촉진하고 새롭게 개편되는 VAC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 모든 시 정부 공무원들에게 이해상충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법 위반 벌금을 높이는 것, 시 운영 시설의 지역사회 입주에 대한 정보를 지도 표시 및 다른 방법으로 강화하는 것 등이다.... 전체적으로 뉴욕 공공정책연구그룹에서는 주민투표 2번 질문에 찬성표를 던지는 쪽을 지지하고 있다. —Gene Russianoff, 뉴욕 공공정책연구그룹

이번 개혁법안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개혁으로 가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출마 후보가 공천을 받는데 필요한 청원서 서명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이 개혁안은 선출직 경선에서의 경쟁을 높이고 따라서 기존의 정치인들이 개혁성향의 신인들을 출마하기도 전에 쉽게 압살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또 이해상충법을 강화하고 독립선거운동 지출내역 공개를 하도록 한 것도 정치인들을 좀더 청렴하게 만들고 외부 압력단체들의 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2번 질문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는데 미미한 변화만 가져올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천리 길을 갈 때도 언제나 첫 걸음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Henry J. Stern, 뉴욕 시민사회단체

지금까지 지나치게 엄격한 공천청원서 서명법 때문에 수많은 후보들이 출마조차 하지 못하고 좌절을 겪어야 했다. 공천청원서에 필요한 서명자 수를 줄인 것은 좀더 효율적이고 주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후보들이 정치일선에 나서는데 장벽을 없애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또 유권자 지원위원회(VAC)를 선거자금위원회(CFB)에 흡수통합 시키는 것은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 등록을 권장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시 정부가 현재 재정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런 정부기구 통폐합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한다. —Scott M. Stringer, 맨해튼 보로장

## 공개 입장표명 코멘트 발췌록(반대 입장)

행정중재재판소를 OATH로 일원화하는 것은 각기 전문성을 가진 행정중재재판의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훗날 시장이 행정법관사들의 임명 및 보직 결정권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도 있다. 각종 보고서 발행 의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시장이 임명한 동 위원회 위원들은 시 의회에서 보고서 의무를 강화 확대하려는 시도를 봉쇄할 수 있다. 지도에 시 운영 공공 시설을 표시하는 일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봐서 2번 주민투표안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갖고 있다. —Alvin M. Berk

2번 주민투표안은 실제로 일곱 가지 개별 문항이지만 그럼에도 이들을 한꺼번에 찬성 또는 반대표를 던지도록 되어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박탈하는 셈이 된다. 이 문항들 가운데 한 가지는 시 쓰레기 수거 문제를 비롯한 다른 사안들을 청취하는 판사들을 단일 기구 내에 배치함으로써 이들의 독립성을 잃게 하고 직업안정성까지 빼앗아서 주민들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James Brennan, 뉴욕주 하원 의원

각 개별 법안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주민투표안을 통과시키기에는 너무나 큰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조항들 가운데 일부는 시 현장개정위원회 심의 마지막 며칠 사이에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 두 번째로 행정중재재판소의 통폐합 같은 사안은 매우 복잡하기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주민투표가 각기 다른 7개 사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표를 던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개별 사안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를 갖고 충분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만이 헌법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다. —Gale A. Brewer, 시 의회 의원

[청원서] 서명자 수는 주 정부의 선거법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이 법이 더 우선권을 갖는다.... 유권자 지원위원회(VAC)는 선거자금위원회가 아니라 선관위 소속이 되어야 한다.... 이해상충법 위반 처벌에 대해 법정 최고 벌금액을 부과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법이다.... 시장이 행정중재재판소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될 경우 사법부 독립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Dan Jacoby, GrassrootsNYC

### 1번 질문 – 답변 제출자 명단

#### 찬성 입장

Matthew Goldstein, CRC 의장  
John H. Banks, CRC 부의장  
Jose A. Padilla, Jr.  
Sebastian Ulanga Santiago  
Theresa Scavo, 2009년도 시 의회 후보  
Henry J. Stern, 뉴욕 시민사회단체 의장 및 전임 공원 관리자

#### 반대 입장

James Brennan, 브루클린 시 의회 의원  
Gale A. Brewer, 6구역 시 의회 의원  
Tyrrell L. Eiland, New Voice Political Action 위원회 의장, 2009년도 시장선거 출마후보  
Pete Gleason  
Dan Jacoby, GrassrootsNYC 이사  
Oliver Koppell, 11구역 시 의회 의원  
뉴욕시 여성유권자 연맹  
Carl E. Person, 2010년도 뉴욕시 검찰총장 선거 자유주의당 후보  
Peter F. Vallone, 전임 시 의회 의장  
Howard Charles Yourow, S.J.D.

### 2번 질문 – 답변 제출자 명단

#### 찬성 입장

Matthew Goldstein, CRC 의장  
John H. Banks, CRC 부의장  
Mark Axinn, 뉴욕 자유주의당  
Eddie Bautista, 뉴욕시 환경정의연맹 이사  
Mark Davies,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 이사  
Tyrrell L. Eiland, New Voice Political Action 위원회 의장, 2009년도 시장선거 출마후보  
Stephen J. Fiala, 시 현장 개정위원회 위원장, 리치몬드 카운티 서기 겸 배심장  
Daniel R. Garodnick, 5구역 시 의회 의원  
Wayne Hawley,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 부이사

Carl E. Person, 2010년도 뉴욕시 검찰총장 선거 자유주의당 후보  
Gene Russianoff, 변호사, 뉴욕 공공정책연구그룹  
Henry J. Stern, 뉴욕 시민사회단체장, 전임 공원·레크리에이션 국 국장  
Scott M. Stringer, 맨해튼 보로장

#### 반대 입장

Alvin M. Berk  
James Brennan, 브루클린 시 의회 의원  
Gale A. Brewer, 6구역 시 의회 의원  
Dan Jacoby, GrassrootsNYC 이사